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 부서장

제 목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 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-1227 (2015.2.26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6호, 2015.1.30.)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·발령 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가. 주요 개정 사항

1) 신설 2개 항목

[117] Desvenlafaxine succinate 경구제(품명: 프리스틱서방정 50밀리그램, 100밀리그램)

[142] Tofacitinib 경구제(품명: 젤잔즈정 5밀리그램)

2) 변경 2개 항목

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

[421] Rituximab(품명: 맵테라주)

붙임 1. 고시 개정안 및 변경대비표

2. 별지_ 신설 및 변경사항 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(www.kha.or.kr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89 (2015.02.27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